

인천광역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2. 5.(월)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0. 26.

나. 제안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2. 10. 27.

라. 상정일자 : 제283회(정례회) 제5차 위원회(2022년 12월 5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천준호 기획조정실장
- 검토보고 : 전상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교복구입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안교육기관 또는 다른 사도에 소재한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제명을 변경함.(안 제명)
- 대안교육기관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신설)
-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에 대안교육기관 학생과 다른 사도에서 전입한 학생 등을 포함하여 확대함.(안 제5조)
- 지원대상별로 지원방법을 구분하여 명확히 규정함(안 제6조)
- 개별지원 신청 및 처리,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개정안의 개요

- 이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복지·지원제도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따른 교복구입비 지원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으며 이에 따른 권고사항(22.2.18.)을 적극 반영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21.1.12.)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기존 6개 조문을 9개 조문으로 전부개정하여 교복비 지원대상 등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입법 취지와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주요 개정내용 검토

- (안 제명) 제명 변경
 - 현행 “인천광역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 를 “인천광역시 학생 교복 지원 조례” 로 변경하여 불명확한 제명의 용어를 바로잡고자 하는 사항임.
- (안 제1조) 목적
 - 안 제1조는 이 조례의 목적이 학생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임을 명시함.
- (안 제2조) 정의
 - “대안교육기관” 에 대한 정의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¹⁾에 따른 정의와 일치시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 (안 제3조~제4조) 시장의 책무 및 교복구입비 지원 근거
 - 안 제3조는 교복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장은 인천광역시 교육감과 행·재정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자체 브랜드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사항이고

1)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법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 안 제4조는 교복구입비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사항임.

○ (안 제5조) 지원대상

- 안 제5조는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의 형평성을 맞추고 지원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그 범위와 대상을 구체화하고자 한 것으로, 현행 조례는 다른 시·도 소재의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의 경우 교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대안교육기관 학생과 다른 시도에서 전입한 학생 등을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제5조(지원대상)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p>제5조(지원대상)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생 또는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 2. 교육감에게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의 중·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한 신입생 3.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나 교육감에게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의 중·고등학교 과정에 전입한 1학년 학생 4.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나 교육감에게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의 중·고등학교 과정에 전·편입한 2, 3학년 학생 중 교복지원을 한 번도 받지 않은 학생 5. 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 6. 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도 소재 대안교육기관의 중·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

- 다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수혜 대상이 얼마나 늘어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안 제6조~제7조) 지원방법 및 지원금액

- 안 제6조 및 제7조는 교복구입비의 지원방법 및 지원금액에 대한 절차 등을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시함.

○ (안 제8조~제9조) 개별지원 및 환수

- 안 8조는 개별지원 신청 및 지원여부 결정 등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는 사항이고,
- 안 제9조는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별지원을 받은 경우 환수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임.

□ 종합 검토의견

-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학생 교복지원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평한 교육환경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교육구입비 수혜대상은 얼마나 늘어나는지?

⇒ (기조실장) 50여명, 약 1,500만원 정도임. 11월 30일, 6개소 등록된 곳이 해당함.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 가. 찬 성 : 8명(신동섭, 이단비, 김대영, 김용희, 김재동, 석정규, 신성영, 신영희)
- 나. 반 대 : 0명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 8명, 반대 : 0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

[붙임]

인천광역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
3. “교복”이란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의 중·고등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4. “교복구입비”란 교복 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행·재정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교복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복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자체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복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생 또는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으로 한다.

1. 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
2. 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의 중·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한 신입생
3.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나 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의 중·고등학교 과정에 전입한 1학년 학생
4.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나 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의 중·고등학교 과정에 전·편입한 2, 3학년 학생 중 교복지원을 한 번도 받지 않은 학생
5. 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
6. 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도 소재 대안교육기관의 중·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

제6조(지원방법)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지원한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대상에 대하여는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감에게 지원(이하 “일괄지원”이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일괄지원 대상이 아닌 학생에 대하여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이하 “개별지원”이라 한다)

제7조(지원 금액) ① 시장은 매년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금액을 교육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에 따라 교복 지원 또는 입학·진학 지원금을 받는 경우. 다만, 1학년 전입생은 제외한다.

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 지원을 받는 경우

제8조(개별지원 신청 및 처리) ① 개별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교복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학생 교복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개별지원 환수)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별지원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된 개별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시·도 소재 대안교육기관 입학 학생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일 이전 2023년도에 다른 시·도 소재 대안교육기관의 중·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한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입학한 것으로 본다.